인공지능학과

# Depart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 학과교육목적

인공지능 핵심 원천기술(딥러닝, 컴퓨터비전, 자연어처리, 음성인식, 빅데이터, 신경망 등)의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응용 특화 분야(헬스케어, 금융, 지능형 에이전트, 게임, 자율주행, 보안 등)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춘 인공지능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 학과전공분야 석사과정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 학과내규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고려대학교 대학원 학칙 또는 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에서 위임하였거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

1. 석사과정 학생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24학점 중 본 학과에서 개설한 기초공통 및 전공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54학점 중 본 학과에서 개설한 기초공통 및 전공과목을 27학 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2021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48학점 중 본 학과에서 개설 한 기초공통 및 전공과목을 27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1. 박사과정 학생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36학점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제외) 중 본 학과에서 개설한 기초공통 및 전공과목을 1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2021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박사과정 학생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30학점 중 본 학과에서 개설한 기초 공통 및 전공과목을 1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1.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 중 본 학과에서 요구하는 기초공통 및 전공과목 학점을 제외한 잔여 학점은 본교

대학원 타학과 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5. 수업연한 단축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은 수업연한을 4년 이상으로 하며,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석·박사 통합과정 기준을 충족한 자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수업연한의 단축 범위는 1년 또는 1학기로 한다. 단축대상은 6학기 또는 7학기의 전체 평균평점 4.0 이상이다. 병역 등의 사유로 수업연한 단축을 유예하는 경우, 수업연한단축 유예신청서를 작성하여 매 학기마다 학과 행정실로 제출해야 한다.

 (2)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이 석·박사 통합과정에 진입하여,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석·박사 통합과정 기준을 충족한 자는 1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단축대상은 통합과정 수학기간 전체의 평균평점이 4.0 이상이다.

6. 정보대학 일반공통과목은 본 학과 기초공통과목 학점으로 인정한다.

※ 단, 2021학년도 2학기까지 이수한 일반대학원 개설 일반공통과목에 한하여, 해당학점을 모두 본 학과 기초공통과목 학점으로 인정한다.

 7.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시 최대 6학점까지 본 학과 전공과목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3조 (종합시험)

1. 석사과정 학생은 학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과목 중 3과목을 선택하여 필기 또는 구술시험에 합격하 여야 한다.

* + 기초수학 분야(택 1과목) : 선형대수, 미적분, 확률과 통계
	+ 전공필수 분야(1과목) : 기계학습
	+ 전공선택 분야(택 1과목) : 딥러닝, 컴퓨터비전, 자연어처리, 음성인식, 빅데이터 분석, 신경망

2.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은 학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과목 중 4과목을 선택하여 필기시험 에 합격하여야 한다.

* + 기초수학 분야(택 1과목) : 선형대수, 미적분, 확률과 통계
	+ 전공필수 분야(1과목) : 기계학습
	+ 전공선택 분야(택 2과목) : 딥러닝, 컴퓨터비전, 자연어처리, 음성인식, 빅데이터 분석, 신경망

 3. 종합시험의 배점은 각 과목당 100점으로 하며, 합격점은 70점 이상이다.

4. 이미 합격한 종합시험 교과목에 대해서는 시험을 면제하고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5. 석사과정에서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진입 또는 석‧박사통합과정에서 석사과정으로 과정을 변경한 경우, 이미 합격한 종합시험 교과목에 대해서는 시험을 면제하고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4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1. 석사학위 심사 청구자는 논문 심사 청구 전까지 아래 요건 중 최소 하나를 만족하여야 한다.

 2. 학과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인공지능 분야 SCIE 등재 저널 논문 1편을 단독 제1저자로 게재 허가

 3. 학과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인공지능 분야 국제학술대회 논문 1편을 단독 제1저자로 발표 허가

 4. 박사학위 심사 청구자는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한다.

 5. JCR IF 카테고리 랭킹 기준 상위 10% 이내의 인공지능 분야 SCIE 등재 저널 논문 1편을 단독 제 1저자로 게재 허가

 6. 학과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인공지능 분야 최우수 국제학술대회 논문 1편을 단독 제1저자로 구두 발표 허가

1. 학위 논문은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조 제7항, 제2조 제8항 신설, 제2조 제2항 내지 제6항, 제3조 제2항 내지 제5항, 제4조 제2항 개정)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3조 제1항, 제4조 제2항 개정)

2. (경과조치) 2021학년도 후기부터 재적생에게 소급 적용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 제1항 내지 제2조 제6항 개정)

2. (경과조치) 2022학년도 전기부터 재적생에게 소급 적용한다.

3. (제2조 제6항의 경과조치) 2021학년도 2학기까지 이수한 일반대학원 개설 일반공통과목에 한하여, 해당 학점을 모두 본 학과 기초공통과목 학점으로 인정한다.